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180호 및 제1181호
- 다. 제출일자 : 2016. 5. 10.
- 라. 회부일자 : 2016. 5. 13.

II. 제 안 이 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III.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세입 수납액 (B)	세출 지출액 (C)	이월금(B-C)		
	계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계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2015년	782,425	763,801	18,624	803,058	682,874	120,184	37,295	82,889
2014년	816,868	791,002	25,866	827,118	738,441	88,677	18,624	70,053
증감	△34,443	△27,201	△7,242	△24,060	△55,567	31,507	18,671	12,836

1. 세입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수입액 (a)	과오납 환불액 (b)	실제 수납액 (C=a-b)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	조정 (B/A)	징수 (C/B)
2015년	782,425	828,497	804,824	1,766	803,058	25,439	1,566	23,873	105.9	96.9
2014년	816,868	853,453	828,782	1,664	827,118	26,335	660	25,675	104.5	96.9
증감	△34,443	△24,956	△23,958	102	△24,060	△896	906	△1,802	1.4	0

2. 세출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집행액(B)					불용액 (A-B)	집행률 (B/A)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소계	건설개량	사고		
2015년	782,425	720,169	682,874	37,295	0	37,295	62,256	92.0
2014년	816,868	757,065	738,441	18,624	0	18,624	59,803	92.7
증감	△34,443	△36,896	△55,567	18,671	0	18,671	2,453	△0.7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 변경사용)

IV.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세입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7,824억 2천5백만원의 105.9%인 8,284억 9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9%인 8,030억 5천8백만원을 징수(수납)하였음.

- 징수율은 96.9%로 전년도와 동일
- 미수납액은 254억 3천9백만원으로 이중 15억 6천6백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238억 7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조정률 (B/A)	징수율 (C/B)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782,425	828,497	803,058	25,439	1,566	23,873	105.9	96.9

○ 상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은 6,830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6,768억 9천6백만원) 대비 0.9%인 61억 8천6백만원 증가되었음.

- 영업수익은 6,528억 3천4백만원으로 전년(6,476억 7천5백만원) 대비 51억 5천9백만원(0.8%) 증가

- 사용료 수익 6,190억 3천8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225억 7천4백만원
- 기타영업수익 112억 2천2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302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292억 2천1백만원) 대비 10억 2천7백만원(3.5%) 증가

• 이자수입	19억 3천5백만원
• 타회계전입금	216억 7천3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66억 4천만원

○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316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357억 2천3백만원) 대비 11.5%인 41억 7백만원 감소되었음.

- 유형자산처분수입(고정자산매각수입)은 34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7억 3천2백만원) 대비 27억 5천3백만원(376.1%) 증가
-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은 281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349억 9천1백만원) 대비 68억 6천만원(19.6%) 감소

○ **이월재원¹⁾** 징수결정액은 1,137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1,408억 3천4백만원) 대비 19.2%인 270억 3천5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징수결정액 증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증감액	비 율
합 계	782,425	828,497	816,868	853,453	△24,956	△2.9
상수도사업수익	658,594	683,082	667,835	676,896	6,186	0.9
영 업 수 익	630,065	652,834	638,729	647,675	5,159	0.8
영 업 외 수 익	28,529	30,248	29,106	29,221	1,027	3.5
자 본 적 수 입	32,913	31,616	30,773	35,723	△4,107	△11.5
유형자산처분수입	444	3,485	2,633	732	2,753	376.1
자본잉여금수입	32,469	28,131	28,140	34,991	△6,860	△19.6
이 월 재 원	90,918	113,799	118,260	140,834	△27,035	△19.2

1) 이월재원 =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 이월재원총당액(이월액)

□ 세입 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조정률 (B/A)	징수율 (C/B)
합 계			782,425	828,497	803,058	25,439	105.9	96.9
상수도사업수익			658,594	683,082	665,533	17,549	103.7	97.4
		영 업 수 익	630,065	652,834	636,911	15,923	103.6	97.6
		사용료수익	594,572	619,038	603,117	15,921	104.1	97.4
		급수공사수익	24,391	22,574	22,574	0	92.6	100.0
		기타영업수익	11,102	11,222	11,220	2	101.1	100.0
		영 업 외 수 익	28,529	30,248	28,622	1,626	106.0	94.6
		이 자 수 입	1,800	1,935	1,935	0	107.5	100.0
		타회계전입금	21,788	21,673	21,150	523	99.5	97.6
		기타영업외수익	4,941	6,640	5,537	1,103	134.4	83.4
자 본 적 수 입			32,913	31,616	31,616	0	96.1	100.0
		유형자산처분수입	444	3,485	3,485	0	784.9	100.0
		토 지	444	3,485	3,485	0	784.9	100.0
		자본잉여금수입	32,469	28,131	28,131	0	86.6	100.0
		시설분담금	32,469	28,131	28,131	0	86.6	100.0
이 월 재 원			90,918	113,799	105,909	7,890	125.2	93.1
		순세계잉여금	55,034	70,053	70,053	0	127.3	100.0
		현금이월채원액	18,624	18,624	18,624	0	100.0	100.0
		수용가미수금	16,755	19,283	16,422	2,861	115.1	85.2
		기타미수금	505	5,839	810	5,029	1,156.2	13.9

2. 세 출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638억 1백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186억 2천4백만원을 합한 7,824억 2천5백 만원으로 전년(8,168억 6천8백만원) 대비 344억 4천3백만원 감소되었음.
- 집행액은 7,201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7,570억 6천5백만원) 대비 368억 9천6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6,828억 7천4백만원을 지출 하고 372억 9천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2.7%에서 92.0%로 감소(Δ0.7%p)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62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598억 3백만원) 대비 24억 5천3백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 (A-B)	집행률 (B/A)
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782,425	763,801	18,624	720,169	682,874	37,295	62,256	92.0

□ 예비비 (결산서 p.88~89)

-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4천6백만원으로 이중 51억 2천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1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총 2건		5,122	5,120	2	
1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183	181	2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배상처분 불복소송비
2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4,939	4,939	0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

□ 이월 (결산서 p.90~95)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19건, 372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186억 2천4백만원) 대비 100.3%인 186억 7천1백만원 증가되었음.

- 건설개량이월²⁾은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은 19건, 372억 9천5백만원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시설비) 258억 1천8백만원 (51.9%)
-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24억 9천1백만원 (77.8%)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남서울아파트 앞~강남성심병원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0억 7천9백만원 (89.0%)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남산배수지 1,3지 내부 방식공사) 10억 6백만원 (59.6%)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가좌배수지 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9억 1천1백만원 (81.3%)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마포구청역~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9억 8백만원 (86.0%)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대현산배수지(1-3지)내부방식공사) 9억 5천6백만원 (89.8%)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8억 7천7백만원 (87.7%)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월곡소배수지 1,2지 내부 방식공사) 7억원 (70.0%)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5억 7천5백만원 (54.8%)

2)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상봉역~면목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4억 5천3백만원 (51.0%)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당신동3가 393-2~당신동1가 309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2억 8천5백만원 (25.7%)
-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억 7천4백만원 (84.3%)
- 간선배관 부설공사 (노원구 관내 미급수지역 급수공사 및 증압장 설치공사) 2억 6천9백만원 (89.7%)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2억 6천3백만원 (59.2%)
- 음수대 설치사업 2억 1천1백만원 (53.3%)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감리비) 1억 2천3백만원 (11.8%)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제1정수장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 7천8백만원 (100%)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뚝도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천8백만원 (12.0%)

○ 원인별 이월액은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259억 4천1백만원(2건, 69.6%), 사전절차지연 112억 5천8백만원(15건, 이월액 대비 30.2%), 유관사업 지연 1천8백만원(1건, 0.05%), 기타 7천8백만원(1건, 0.2%)임.

□ 전년도 이월 (결산서 p.96~99)

○ 전년도 이월사업은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33건, 186억 2천4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177억 4천3백만원 (이월액 대비 집행률 95.3%)임.

□ **전용** (결산서 p.100~101)

- 예산 전용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등 10건, 84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13건, 69억 1천9백만원) 대비 22.5%인 15억 5천9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인일
			증액	감액	
총 10건			8,478	8,478	
1	정수장 시설유지보수(정수비, 기타교체비)	3,037	-	70	'15.02.17
	기본경비(정수비, 사무관리비)	75	70	-	
2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민간위탁금)	3,996		1,838	'15.07.15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	1,404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사무관리비)	0	247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사회보험부담금)	0	131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공공운영비)	0	53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시설장비유지비)	0	3	-	
3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503	-	125	'15.07.15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54	-	34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372	159	-	
4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민간위탁금)	16,169	-	5,476	'15.07.27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4,564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사회보험부담금)	0	432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0	400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사무관리비)	715	77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배상금등)	0	3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증인일
			증액	감액	
5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배급수비, 급수계량기교체비)	9,359	-	11	'15.09.11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공공운영비)	0	7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배상금등)	0	4	-	
6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배급수비, 급수계량기교체비)	9,359	-	302	'15.09.15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기타교체비)	82	302	-	
7	기본경비(배급수비, 직책급업무추진비)	4	-	1	'15.10.26
	기본경비(정수비, 직책급업무추진비)	0	1	-	
8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보수)	43,098	-	197	'15.11.17
	인건비성 경비(정수비, 기타직보수)	4,11	113	-	
	인건비성 경비(원수 및 취수비, 기타직보수)	349	42	-	
	인건비성 경비(일반관리비, 기타직보수)	1,211	42	-	
9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성과상여금)	2,373	-	242	'15.12.15
	인건비성 경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성과상여금)	646	-	121	
	인건비성 경비(정수비, 성과상여금)	1,429	-	55	
	인건비성 경비(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20,306	418	-	
10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배급수비, 사회보험부담금)	73	-	6	'15.12.23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배급수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7	6	-	

□ 변경사용 (결산서 p.56~69, 74~77)

- 예산 변경사용은 “상수도관 누수복구” 등 총 7건, 13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10건, 38억 2천6백만원) 대비 63.4%인 24억 2천7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액	감액	
총 7건			1,399	1,399	
1	상수도관 누수복구(배급수비, 감리비)	2,790	-	800	'15.12.01
	상수도관 누수복구(배급수비, 기타교체비)	23,419	800	-	
2	자양취수장 기전설비 개량(기계장치, 시설비)	2,920	-	238	'15.07.10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계장치, 시설비)	0	238	-	
3	상수도 GIS 구축(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5,641	-	197	'15.09.16
	아리수 인식개선(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3,031	197	-	
4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보수)	43,098	-	130	'15.11.17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기타직보수)	335	130	-	
5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일반관리비, 국외업무여비)	80	-	17	'15.10.23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일반관리비, 국외업무여비)	44	17	-	
6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대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300	-	15	'15.11.13
	상수도관 누수복구(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15	15	-	
7	아리수 인식개선(일반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10	-	2	'15.08.06
	아리수 인식개선(일반관리비, 기타보상금)	20	2	-	

□ 불용 (결산서 p.130~145)

○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7,824억 2천5백만원의 8.0%인 62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598억 3백만원) 대비 24억 5천3백만원(4.1%)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전년도 7.3%에서 8.0%로 0.7%p 증가되었음.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30억 3천6백만원 (4.9%)
-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9천1백만원 (5.1%)
- 예산 절감	62억 7천3백만원 (10.1%)
- 예비비 잔액	15억 2천4백만원 (2.4%)
- 낙찰 차액	165억 4천만원 (26.6%)
- 집행 잔액	316억 9천2백만원 (50.9%)
합 계	622억 5천6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중 계획변경·취소 사업은 4건으로 다음과 같음.

<불용 사업 중 계획변경·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계 획 변 경 · 취 소 액	사 유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민간위탁금)	10,692	2,473	수도계량기 검침원 직접고용에 따른 사업변경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급수계량기 교체비)	9,367	498	디지털 계량기 구매물량 축소
수질시험연구 (사회보험부담금)	143	6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시 응시 인원 미달로 재공고 채용하여 근무기간 단축
수질시험연구 (행사운영비)	91	59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 및 취소

□ 세출 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C)/A)
합 계			782,425	719,034	682,874	37,295	62,256	92.0
상수도사업비용			512,453	467,337	462,758	4,974	44,721	91.3
		영 업 비 용	507,527	463,676	459,097	4,974	43,456	91.4
		원수및취수비	20,770	20,198	20,198	-	572	97.2
		정 수 비	160,491	150,054	149,141	972	10,378	93.5
		배 급 수 비	156,935	140,895	137,503	3,728	15,704	90.0
		일 반 관 리 비	113,432	102,257	101,983	274	11,175	90.1
		징수및수용가 관 리 비	31,508	26,537	26,537	0	4,971	84.2
		급 수 공 사 비	24,391	23,735	23,735	0	656	97.3
		영 업 외 비 용	3,702	3,661	3,661	0	41	98.9
		차입금이자상환	3,702	3,661	3,661	0	41	98.9
		예 비 비	1,224	0	0	0	1,224	0.0
자 본 적 지 출			251,348	233,953	202,372	32,321	16,655	93.4
		유형자산취득	137,933	120,865	115,225	6,379	16,329	88.2
		토 지	13	0	0	0	13	0.0
		구 축 물	112,970	100,466	94,883	6,323	11,764	89.6
		기 계 장 치	20,001	15,972	15,915	56	4,030	79.9
		차 량 운 반 구	531	512	512	0	19	96.4
		공 기 구 비 품	4,418	3,915	3,915	0	503	88.6
		비가동설비자산	50,820	50,793	24,852	25,942	26	99.9
		건설중인자산	50,820	50,793	24,852	25,942	26	99.9
		비유동부채상환	62,295	62,295	62,295	0	0	100.0
		차입금원금상환	62,295	62,295	62,295	0	0	100.0
		예 비 비	300	0	0	0	300	0.0
이 월 예 산			18,624	17,744	17,744	0	880	95.3
		상수도사업비용	1,648	1,646	1,646	0	2	99.9
		유형자산취득	16,976	16,098	16,098	0	878	94.8

3.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대차대조표 (결산서 p.151~152)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은 5조 4,274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5조 4,444억 9천6백만원) 대비 170억 5백만원 감소되었음.
- 자본은 5조 1,165억 9천만원으로 전년(5조 629억 1천8백만원) 대비 536억 7천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³⁾도 전년도 92.99%에서 94.28%로 1.29%p 증가되었음.
- 부채⁴⁾는 3,109억원으로 전년(3,815억 7천7백만원) 대비 706억 7천7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도 7.54%에서 6.07%로 1.47%p 감소되었음.

(단위: 억원)

자 산	2015년	2014년	증감액	부채·자본	2015년	2014년	증감액
유 동 자 산	1,688	1,281	407	부 채 합 계	3,109	3,816	△707
현금과예금등	1,241	937	304	유 동 부 채	481	873	△392
미 수 금	306	221	85	비유동부채	2,628	2,943	△315
저 장 품	141	123	18	자 본 합 계	51,166	50,629	537
비 유 동 자 산	52,587	53,164	△577	자 본 금	10,850	7,324	3,526
가동설비자산	51,404	48,970	2,434	자본잉여금	37,893	37,413	480
비가동설비자산	1,133	4,143	△3,010	이익잉여금	2,423	5,892	△3,469
무 형 자 산	18	19	△1				
기타비유동자산	32	32	0				
자 산 합 계	54,275	54,445	△170	부채·자본 합계	54,275	54,445	△170

3)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4)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 2015년도말 기준 채무는 2,939억 5백만원으로 부채의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3,562억원) 대비 622억 9천5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310,900	57,623	128,300	△70,677	381,577
채 무	293,905	0	62,295	△62,295	356,200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53)

○ 전년도의 경우 274억 2천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2015 회계연도에서는 39억 5천5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음.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손실)(E)					당기순이익(손실)(H)		
계 (C-D)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계 (E+F-G)	영업외수익 (F)	영업외비용 (G)
△27,957	652,835	510,424	142,411	170,368	△3,955	36,549	12,547

3) 이익잉여금 발생·처분(안) (결산서 p.154)

○ 이익잉여금은 56억 9천7백만원 발생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이익의 처분)⁵⁾에 따라 56억 9천7백만원을 이익적립금과 감채적립금으로 처분하였음.

(단위: 백만원)

이익잉여금발생				이익잉여금처분				차기이월
계	전 기 이 월	전 기 오 류	당 기 순손실	계	이 익 적립금	감 채 적립금	건 설 적립금	미 처 분 이익잉여금
5,697	0	9,652	△3,955	5,697	570	5,127	0	0

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V.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824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8,168억 6천8백만원) 대비 344억 4천3백만원 감소되었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입 예산현액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비 고
예산현액	782,425	816,868	842,341	863,252	901,079	지속적 감소 추세
증·감액	△34,443	△25,473	△20,911	△37,827	-	

- 징수결정액(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5.9%인 8,284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104.5%) 대비 조정률은 1.4%p 증가되었는데, 이는 시설분담금 감소⁶⁾에 따른 자본적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익 및 원·정수판매수익 증가⁷⁾에 따른 상수도사업수익 증가와 이월재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합 계	782,425	828,497	105.9	816,868	853,453	104.5
상수도사업수익	658,594	683,082	103.7	667,835	676,896	101.4
자본적수입	32,913	31,616	96.1	30,773	35,723	116.1
이월재원	90,918	113,799	125.2	118,260	140,834	119.1

재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세입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6) 도시개발사업 추진 보류 등에 기인

7)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기인

액의 차이(조정률)가 매년 크게 나고 있다는 점은 그 만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용료수익이나 시설분담금은 경제 여건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20% 이상 낮게 추계하고 있는 바, 반드시 보수적인 세입 추계가 좋은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조정률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조정률 현황〉

(단위: 백만원, %)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55,034	70,053	127.3	74,852	90,270	120.6	65,306	80,526	123.3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인 254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263억 3천5백만원) 대비 8억 9천6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238억 7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억 6천6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음.

미수납액 중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였고 특히 2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전년 대비 8.0% 감소되었는데, 이는 장기·고액 체납을 전담하는 본부 체납징수팀과 사업소간 합동징수체제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세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여전히 과도하며,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⁹⁾에

8)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

9) 미수납액 비율 : 서울시 일반회계 7.0%, 기타특별회계 1.3%(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

비해서도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징수 대책 노력이 요구됨.

〈상수도사용료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015년	18,266	16,045	2,221
2014년	19,729	17,314	2,415
증감액(증감률)	△1,463(△7.4%)	△1,270(△7.3%)	△193(△8.0%)

한편, 결손처분은 전년(6억 6천만원) 대비 9억 6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초동 강남국제스파 과태료(10억 9천5백만원)’ 불납결손 처분에 주로 기인한 것임.

동 건은 2012년 10월 소송패소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불납결손 처분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13.9월)한 바 있으며, 이후 주기적인 재산조회 결과에도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한 것임.

- 그리고 결산서(p179) 재무제표 상에 기재되어 있는 2015년 기타미수금 중 구의취수장 토지매각대금 104억 2천5백만원은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예산결산 상 미수납액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음.

이는 용도 폐쇄된 구의취수장을 ‘거리예술창작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정책과의 “유상회계 이관 및 대금지급 방침(‘14.9.11)”에 따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유상회계 이관을 위해 2016년 세출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시 예산담당관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관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세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특히 2015년말 기준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전년도 12.25%에서 18.31%까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구의취수장 매각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2. 세출 결산

1) 총괄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7,638억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6억 2천4백만원을 합한 7,824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억 4천3백만원 감소되었음.
- 예산 집행은 7,201억 6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6,828억 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372억 9천5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22억 5천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92.7%에서 92.0%로 0.7%p 감소되었음.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C)/A
763,802	18,624	8,478 △8,478	1,399 △1,399	782,425	682,874	37,295	62,256	92.0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88~89)

- 예비비¹⁰⁾는 세출 예산현액의 0.85% 수준인 66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51억 2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음.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10)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6,646	5,120	7,972	0	8,550	0

- 예비비 지출 항목 중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배상처분 불복소송비” 1억 8천3백만원은 서초LH스타힐스아파트 상수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피해배상 처분¹¹⁾에 대해 입주민(3,34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¹²⁾’ 제기에 따른 소송비용임.

다만, 소송비용¹³⁾의 97%를 차지하는 송달료 1억 7천8백만원은 당초 입주민 3,341명을 상대로 송달료를 각각 산정한 것으로 현재 재판부에 예치되어 있지만, 입주민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입주민 대표자 1명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치되어 있는 송달료는 이후 회수될 것임(7월 1일 변론기일 예정).

-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은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도로(금호동 1가 127-15 등 5필지)를 조합 측에 매매(62억 1천3백만원)하였으나, 이후 동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2015년 9월 24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안)을 서울시가 수용함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단위: 백만원)

11) LH공사와 서울시는 부진정연대하여 입주민 3,341명에게 4억 9백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음

12) 이 사건 아파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 LH공사에 있고 이 사건 오염사고의 발생 원인이 LH공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15.2.13).

13) 송달료 177,908천원, 법원인지대 207천원,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총 2건		5,122	5,120	2	
1	기본경비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4,939	4,939	0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
2	기본경비 (일반관리비,배상금등)	183	181	2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배상처분 불복소송비

3) 예산이월 (결산서 p.90~95)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19건, 372억 9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¹⁴⁾이며, 전년(186억 2천4백만원) 대비 100.3%인 186억 7천1백만원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50% 이상 되는 사업 건수도 전체 19건 중 16건에 달하고 있음.
- 이월 원인 현황을 보면, 사전절차지연 15건(112억 5천8백만원), 장애요인 발생 2건(259억 4천1백만원), 유관사업지연 1건(1천8백만원), 기타 1건(7천8백만원)으로 '사전절차지연'이 이월 건수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가 2015년 하반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설현대화 예산으로 볼 수 있고, 여과지 퇴수밸브 교체작업 등 작업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로 동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를 이월한 것으로 전체 이월액의 69.6%(259억 4천1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14) 이월률 : 일반회계 1.6%, 기타특별회계 6.2%(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계	50,775	24,834	25,941	이월액의 69.6%
공사(시설비)	49,736	23,918	25,818	
공사(감리비)	1,039	916	123	

한편, 작업공정 지연은 퇴수밸브 설계 오류에 따른 것으로 시공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 공사 준공이후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계획¹⁵⁾에 있고 2016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지만 준공 기한이 늦어짐¹⁶⁾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공사」 이월 건수는 4건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비굴착 공법 구간의 모든 공사가 이월되고¹⁷⁾ 있는데 2015년에도 비굴착 공법 구간 2개소¹⁸⁾ 모두 예산현액의 85% 이상을 신기술 심의절차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의 이월 건수가 전년도 8건에서 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비굴착 공법에 의한 정비공사 건수가 5건에서 2건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에 대한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굴착 공법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과 도로굴착 통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 발주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거나 공사 연장을 축소하여 발주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전년도 결산심사 시에도 주문하였지만 여전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임.

15) 사공사인 삼성물산에 40~50억원 가량 지연배상금 부과('15.12.15 방침) 계획

16) 당초 '16.12.31 → 변경 '17.6.30(예상)로 약 6개월 정도 지연됨

17) 2013년 3건, 2014년 5건, 2015년 2건의 비굴착 공법 구간 공사 모두 이월

18) 남서울아파트 앞~강남성심병원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마포구청역~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제1정수장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정수장시설유지보수)」는 예산현액 78백만원을 전액 이월하고 있는데, 이는 ‘뚝도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정수장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안전진단을 위해 정수지 내부를 비워야 하지만 유출밸브 고장으로 인해 내부 안전진단 수행이 불가능하여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를 연도 말에 긴급 발주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출밸브 등의 고장에 따른 긴급 발주로 인해 예산 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건 외에도 밸브 고장에 의해 시설물 정비나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례¹⁹⁾가 발생하고 있는 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평상시 노후 밸브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음수대 설치 사업」은 기존 학교 및 공원 음수대 설치와는 달리 경영관리부 홍보과에서 아리수 홍보 목적을 위해 도심형 아리수 음수대 복합공간을 3개소²⁰⁾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장소 확보를 위한 관할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현액 3억 9천6백만원 중 53.3%인 2억 1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간선배관 부설공사」 등도 유관 기관과의 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협의를 마치도록 해야 할 것임.

- 2015회계연도 이월액의 11.9%를 차지하는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식 공사」는 5건²¹⁾ 모두 예산현액의 50% 이상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동

19) 밸브 고장으로 정수지 내부 건조 불가로 방수방식공사 지연, 밸브 고장으로 민원이 제기된 송배수관 정비공사 비굴착 공사 구간 배수가 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음.

20) 서울광장, 역촌동 평화공원, 신촌 명물거리 등 3개소

공사 발주에 앞서 공법 적용에 대한 업체 간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수립 보완 용역” 수행 이후 그 결과를 방수·방식 공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5건 모두 발주를 연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됨(시의회도 선 용역수행, 후 발주 주문).

다만, 2016년에도 동 사업과 관련하여 4개소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예산 이월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이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사업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에 2023년까지 약 1,2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5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사 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정수장시설유지보수 (제1정수장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	78	78	100.0	기타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 시험 연구장비 확충 (대현산배수지(1-3지) 내부 방식공사)	1,065	956	89.8	사전절차지연
간선배관 부설공사 ²²⁾ (노원구 관내 미급수지역 급수공사 및 증압장 설치공사)	300	269	89.7	사전절차지연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비굴착) (남서울아파트 앞~강남성심병원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212	1,079	89.0	사전절차지연
정수장시설유지보수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1,000	877	87.7	사전절차지연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비굴착) (마포구청역~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056	908	86.0	사전절차지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²³⁾	325	274	84.3	사전절차지연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가좌배수지 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1,121	911	81.3	사전절차지연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3,200	2,491	77.8	사전절차지연

21) 대현산 배수지, 가좌배수지, 월곡소배수지, 남산배수지,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사 업 명	예 산 액	사 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월곡소배수지 1,2지 내부 방식공사)	1,000	700	70.0	사전절차지연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남산배수지 1,3지 내부 방식공사)	1,688	1,006	59.6	사전절차지연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444	263	59.2	사전절차지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1,049	575	54.8	사전절차지연
음수대 설치사업(도심형 아리수 음수대)	396	211	53.3	사전절차지연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49,736	25,818	51.9	장애요인발생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상봉역~면목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889	453	51.0	사전절차지연

4) 전용 (결산서 p.100~101)

- 예산의 전용²⁴⁾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수도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 등 총 10건, 84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69억 1천9백만원) 대비 22.5%인 15억 5천9백만원 증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전용률은 높아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15년	782,425	10	8,478	1.1	전년 대비 22.5% 증가
2014년	816,868	13	6,919	0.8	
2013년	842,341	6	4,375	0.5	

-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 전용액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계획²⁵⁾」 및 「서울시 상수도 검침·교체 종사원 정

22) 미급수 지역 급수공사 구간 내 사유지 토지 사용승낙 및 노원구청 녹지과와 업무 협의 지연으로 이월

23) 환경부 승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

24) 전용범위는 “항”내 “세항”간 또는 동일 “세항”내 “목”간 전용

25)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0호('15.6.18)

규직화 관련 협약서²⁶⁾」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기간제근로자(종사원 428명)로 전환²⁷⁾’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직접 고용에 따른 차량 구입 등의 사유로 4건, 74억 8천5백만원을 전용하여 전체 전용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전용 사업 중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는 2014년 6월 서울물연구원의 PE보온재 성능 시험 결과와 더불어 2014년 겨울철 시범 설치한 PE보온재의 동파방지 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설치 가격²⁸⁾ 및 보급성 측면을 고려하여 당초 동파안전계량기(15mm) 구매 물량을 축소하고 벽체형 PE보온재를 확대²⁹⁾ 구매함에 따라 3억 2백만원을 전용(15.9.15)한 것임.

- 「인건비성 경비」 1억 9천7백만원 전용은 2015년 8월 기준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결원이 145명(결원율 7.2%)에 달했고 특히 교대근무 및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던 관리운영직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결원률 15.4%) 자체 전보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³⁰⁾을 신규 채용(50명)’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인력 부족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상수도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규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6) 노동조건, 임금 및 고용형태 등에 대한 서울시 관련 부서와 노동조합과 협약(15.7.13)

27) 수도계량기 점검(15.7.22), 수도계량기 교체(15.7.14)

28) 동파안전계량기((15mm) 약 24,000원, 벽체형 PE보온재 약 11,000원

29) 동파안전계량기 22,655개 → 8,000개, 벽체형 PE보온재 12,000개 → 23,320개

30) 주요 업무 : 수돗물 생산·급수설비 관리, 상수도민원처리, 수질검사

〈상수도사업본부 직렬별 인력현황('15년 8월 기준)〉

(단위: 명, %)

총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연구직군		기 타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145	7.2	△23	4.8	△80	9.1	△85	15.4	△3	4.7	+46	-

5) 변경사용 (결산서 p.56~69, 74~77)

- 2015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7건, 13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10건, 36억 2천6백만원) 대비 63.4%인 24억 2천7백만원 감소되었지만, 2013회계연도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15년	782,425	7	1,399	0.2	전년 대비 63.4% 감소
2014년	816,868	10	3,826	0.5	
2013년	842,341	5	622	0.1	

- 변경사용 사업 중 「상수도관 누수복구(감리비 → 기타교체비)」 8억원 변경사용이 전체 변경사용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음.

당초 상수도관 누수복구 감리비는 과다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현액 27억 9천만원의 28.7%인 8억원을 기타교체비로 변경사용 하였는데, 이는 감리비 산정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적정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설비)」은 「자양취수장 기전설비 개량(시설비)」에서 2억 3천8백만원을 변경사용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임.

이는 노후된 취수장 시설정비를 위하여 2014년 투자심사를 상정하였으나 소송 중인 건으로 사업이 ‘재검토’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소송 패소 이후 2015년 투자심사를 재요청하여 ‘타당’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양취수장을 시급히 활용하여 원수비를 절감(146억원/년) 할 목적으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불가피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연도 중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아리수 인식개선(사무관리비)」은 「상수도 GIS 구축(사무관리비)」에서 1억 9천7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는데, 2014회계연도에서도 동일하게 1억 6천7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고 3억 6천7백만원을 전용한 바 있음.

〈최근 2년간 변경사용 및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비 고
	변경사용	전용	변경사용	전용	
금 액	197	-	167	367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의 변경사용과 전용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아리수 인식개선(사무관리비)」과 「상수도 GIS 구축(사무관리비)」의 변경사용 사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동일한 “목”내 “세목” 간 예산을 관리자(부서의 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 모든 사업간 변경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업이나 적어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 내에서 변경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변경사용 사업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전용액 조서와 같이 별도의 조서³¹⁾를 결산서에 추가 작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6) 불용 (결산서 p.130~145)

-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62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598억 3백만원) 대비 24억 5천3백만원(4.1%) 증가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0%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³²⁾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1% 이내로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³³⁾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 예비비 지출이 없어 79억 7천2백만원 전액을 예비비 잔액으로 불용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로 51억 2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15억 2천4백만원을 예비비 잔액으로 불용한 점을 고려³⁴⁾한다면 실제 불용액은 전년 대비 89억 1백만원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원인별 불용 현황 중 전년 대비 ‘예산집행잔액’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용액의 50% 이상(316억 9천2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31) 현행 행자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는 변경사용에 대한 별도의 서식 규정이 없음

32) 일반회계 2.3%, 기타 특별회계 4.3%(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

33)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시 예산담당관에서 총괄 편성 관리하고 있음

34) 예비비지출 증가 → 불용액 감소, 예비비지출 감소 → 불용액 증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산정한 결과로 향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5년	62,256 (100)	3,036 (4.9)	3,191 (5.1)	6,273 (10.1)	1,524 (2.4)	16,540 (26.6)	31,692 (50.9)
2014년	59,803 (100)	1,928 (3.2)	628 (1.1)	3,035 (5.1)	7,972 (13.3)	11,466 (19.2)	34,774 (58.1)
증 감	2,453	1,108	2,563	3,238	△6,448	5,074	△3,082

- 불용액 과다 사업 중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현액(1억 2천5백만원)의 78.4%인 9천 8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현액의 60% 이상이 불용됨에 따라 작년 결산심사 시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을 지적³⁵⁾하였고, 2016년도 예산은 2015년에도 예상 불용률을 고려하여 대폭 삭감하여 편성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수도시설 기술진단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125	98	78.3	98	69.4	236	62.7	'16년 예산현액은 3천5백만원으로 감액

35)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_ 내용 中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60% 이상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로 기술진단 전문위원 활용 및 기술진단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금액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사업 사무관리비(예산현액 9천만원) 중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에너지진단 용역비(6천만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부 용역으로 시행하던 에너지진단을 자체 시행함으로써 기편성된 진단 비용을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³⁶⁾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지정이 2014년 9월 25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이나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2015회계연도 수도시설 기술진단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계	125,000	27,080	97,920	78.3
사무관리비	90,000	15,878	74,122	82.4
공공운영비	25,000	2,063	22,937	91.7
일반재료비	10,000	9,139	861	91.4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는 예산현액(104억 4백만원)의 45.6%인 47억 4천1백만원을 불용하였고 전년도와 경우도 고품질³⁷⁾ 계량기 구매를 민원발생 사유로 취소함에 따라 불용률이 24.5%에 달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음(불용률 '13년 19.2% → '14년 24.5% → '15년 45.6%).

특히, 예산과목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48.9%인 45억 8천만원을 불용하였음.

〈세부 예산과목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집행현황〉

36) 동 사업 불용률의 61.3%를 차지하고 있음

37) 구경 80mm 이상의 초음파식, 전자식 계량기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비 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9,367	4,786	4,580	48.9	·사업변경 4억 9천8백만원 ·집행잔액 36억 5천4백만원 ·낙찰차액 4억 2천8백만원

사업계획 변경은 연구용역³⁸⁾을 수행한 이후 적합한 방법을 제시받아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디지털 계량기 구매 물량을 축소³⁹⁾한 것이지만, 제출한 학술연구 용역('15.8.17)과 2016년도 서울연구원 정기연구과제('15.10.29)는 심의 결과 모두 채택되지 못함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4억 9천8백만원을 불용했으며,

수도계량기의 구매단가 하락과 더불어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 물량을 축소⁴⁰⁾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36억 5천4백만원을 불용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특히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는 전년도에도 민원 발생의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전액 불용(17억 2천2백만원)함에 따라 2015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매 수량을 대폭 축소하여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고품질 및 디지털 계량기 설치 사업 추진에 있어 계량기 구매⁴¹⁾나 설치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 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불용률	2014회계연도
-------	-----	-----	------	-----	-----	----------

38)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용역

39) 3,000개 → 500개

40) 150~300mm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가 4회 유찰됨에 따라 109개를 구매하지 못함

41) 업체 간 민원발생, 제조·판매업체 수가 적어 빈번하게 유찰이 되는 등 구매가 용이하지 않음

	현액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미불용지 보상 ⁴²⁾	13	0	0	13	100.0	1,420	6.34
수도시설 기술진단	125	27	0	98	78.3	98	69.7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10,404	5,663	0	4,741	45.6	10,089	24.5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⁴³⁾	322	202	0	120	37.3	241	10.8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444	31	263	150	33.8	-	-
역류방지밸브 설치	1,500	1,021	0	478	31.9	2,500	27.8
수질시험연구	2,257	1,702	0	555	24.6	2,638	21.5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205	924	0	282	23.4	1,504	40.4
병물아리수 공급	1,359	1,051	0	308	22.7	1,356	18.5
배수지물탱크 청소	2,990	2,315	0	675	22.6	2,985	24.4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확충	33	26	0	7	21.2	-	-
하수수질 시험연구장비 확충	420	331	0	89	21.2	45	24.4
하수시험연구	151	119	0	32	21.2	113	30.2
수도요금부과징수	1,153	910	0	243	21.1	1,071	17.1
자양취수장 기전설비 개량	2,681	2,121	0	560	20.9	-	-
유량계 교정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	540	431	0	109	20.2	512	21.7
아리수품질확인제	2,707	2,162	0	546	20.2	3,802	26.4

- 한편,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현액의 7.1%인 114억 5천만원을 불용하고 있고 2013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불용률은 증가되고 있음.

이는 인건비 편성 시 정원 기준(10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현원 차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 상수도사업본부 정·현원 대비 결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불용액도 크게 증가한 것임.

42) 소송 진행에 따라 예산지출이 없었고 '16년 1월 원고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패소가 예상되고 '16년도 예산에는 미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예상됨.

43) 아프리카 차드 지역이 외교통상부 안전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고, '16년에는 대상 지역을 베트남으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향후 인건비성 경비 편성 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원 및 결원 전망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인건비성 경비 불용률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정 원 (예산편성시)	현 원 (1/1 기준)	결 원	불용률	비 고
2013년	2,170	2,132	△38	1.9	'16년은 정원 조정 및 신규임용으로 인해 결원은 37명으로 감소
2014년	2,185	2,054	△131	4.2	
2015년	2,156	1,977	△179	7.1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배급수관)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는 도서 인쇄비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액으로 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대형 프린트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과 설계도서를 출력함에 따라 인쇄비가 절감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전에 검토 가능했던 사항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검토된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16년도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도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년도와 같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⁴⁴⁾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소 프린트기와 복사기를 이용한다면 이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병물아리수 공급」 사업 공공운영비는 병물아리수 적재 및 상차 용도의 전동 지게차 2대의 자동차 책임보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지게차는 병물아리수 공장 내에서만 운행하고 도로 운행을 하지

44)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 '15년 10백만원 → '16년 20백만원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 '15년 6백만원 → '16년 6백만원

않아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전액 불용(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지만, 이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가 가능했던 사안으로 판단됨.

-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4천5백만원)는 2007년 구매한 내시경장비(18대, 2천5백만원/대) 고장 등에 대비하여 수리비로 편성하였지만, 수리비가 대당 1천1백만원으로 고가이고 내구연한(9년)이 도래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하지 않고 2012년 구매한 소형 내시경장비(93대, 30만원/대)⁴⁵⁾로 대체 사용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결산검토위원 지적 사항).

이와 관련하여 내시경장비 수리비로 편성한 공공운영비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60% 이상 불용되고 있는 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12년 구매한 소형 내시경장비를 활용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2016년도 공공운영비를 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2017년도 예산은 이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고가의 내시경 장비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매각이나 불용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시설부대비 및 공공운영비 60%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45) 내시경 장비의 기술발전예 따라 장비의 소형화 및 가격하락으로 인해 저가의 소형 장비('12년 구매)로도 '07년 구매한 고가의 전문 내시경장비와 비교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음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10,000	300	9,700	97.0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6,000	2,042	3,958	66.0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시설부대비	45,000	17,958	27,042	60.1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공공운영비	45,000	0	45,000	100.0
병물아리수 공급	공공운영비	3,000	0	3,000	100.0
수도시설 기술진단 ⁴⁶⁾	공공운영비	25,000	2,063	22,937	91.7
아리수품질확인제 ⁴⁷⁾	공공운영비	25,600	9,859	15,741	61.5

- 이상과 같이 최근 세입 예산 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하고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51~153)

- 2015년말 기준 부채는 3,109억원으로 전년(3,815억 7천7백만원) 대비 645억 5백만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7.54%에서 6.07%로 1.47%p 감소되었음.

〈최근 5년간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부 채	310,900	381,577	446,082	430,713	384,506
부채비율	6.07	7.54	8.96	8.82	7.98

46) 진단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장비고장 미발생으로 인해 불용 발생

47) 임대차량(8대)의 유류비로 유류비 하락 및 차량 운행 축소로 불용액 과다 발생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차입⁴⁸⁾이 이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2015년도말 기준 채무⁴⁹⁾는 2,939억 5백만원으로 전년(3,562억원) 대비 622억 9천5백만원 감소되었으며, 향후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2022년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계획(미확정)에 있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310,900	57,623	128,300	△70,677	381,577
채 무	293,905	0	62,295	△62,295	356,200

그러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부채(채무) 감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토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여유 재원으로 부채를 감축하여 건전재정의 노력을 보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축⁵⁰⁾과 더불어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 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⁵¹⁾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편, 공급원가는 전년 대비 톤당 33.70원 증가⁵²⁾된 반면 공급단가는

48) '08년~'13년까지 6년간 총 5,420억원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였음

49) 부채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50) 세출 구조 조정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한 채무잔액 조기 상환 고려

51)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 등 급수계통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과 아리수 응용을 향상을 위한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 및 음수대 설치사업 등에 예산 편성

52)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와 전력요금 할인을 감소에 따라 동력비 증가, 수선교체비 증가 등

톤당 0.7원 하락⁵³⁾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⁵⁴⁾**은 전년도 89.08%에서 84.52%로 크게 낮아지고 있고 이후 추가 하락⁵⁵⁾이 예상되는 등 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부채 관리와 더불어 **요금현실화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공급원가(원/m ³)	673.03	639.33	618.56	630.70	621.44
공급단가(원/m ³)	568.85	569.55	569.08	561.27	516.21
요금현실화율(%)	84.52	89.08	92.00 ⁵⁶⁾	88.99	83.07

53) 업종별 평균 단가 차이가 있어 실제 사용량에 따라 평균 공급단가 변동된 것임

54) $\text{요금현실화율}(\%) = [\text{요금단가}(\text{원}/\text{m}^3) / \text{요금원가}(\text{원}/\text{m}^3)] \times 100$

$\text{요금인상요인}(\%) = [(\text{총괄원가} - \text{급수수익}) / \text{급수수익}] \times 100$

55) 전년도 뚝도아리수정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2016회계연도 결산 시 요금현실화율은 83.05%까지 하락 예상

56) 전년도에 비해 조류발생 감소로 분말활성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32억 5천만원 감소되고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감소에 따라 수선교체비가 전년대비 43억 3천7백만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임